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19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강경숙 · 차규근 · 서왕진
신장식 · 김준형 · 황운하
김재원 · 정춘생 · 백선희
김형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야 함.

그런데 최근 현행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 대한 무고성·보복성 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교원은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의심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

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
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사건송치”를 “사건송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절한 지”를 “적절한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법경찰관의 <u>사건송치</u>)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u>적절한 지</u>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u><신 설></u>	제24조(사법경찰관의 <u>사건송치</u> 등) ① ----- ----- ----- ----- -----<u>적절한지</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u>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u>